

시민과 함께하는 교통·생활분야 특별단속

1 기본 현황

□ 사업개요

회 계	일반회계		
사업기간	<input checked="" type="checkbox"/> 연례반복		
사업내용	○ 대기질 개선 및 쾌적한 생활환경조성을 위해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과 함께 市·자치구 합동 교통·생활분야 특별단속 추진		
사업비 (당해년도)	78,850천원	(국비)	(시비)78,850천원
		기타 (예산 외) (구비)	(기타)

□ 사업 담당자

실·국	부서명	과 장	팀장	주무관
기후환경본부	기후대기과	신대현 2133-3590	김원균 2133-3652	김한규 2133-3607

※실국 및 부서명은 예산서 기준으로 작성되어 현재부서와 다를 수 있습니다.

2 예산 설명

□ 예산 총괄

(단위 : 천원, %)

구 분	2018예산액 (A)	2019예산액 (B)	증감 (B-A)	(B-A)*100/A
계	(x-) 0	(x-) 78,850	(x-) 78,850	(x-) 0
사무관리비	(x-) 0	(x-) 20,000	(x-) 20,000	(x-) 0
행사실비보상금	(x-) 0	(x-) 9,600	(x-) 9,600	(x-) 0
자치단체경상보조금	(x-) 0	(x-) 49,250	(x-) 49,250	(x-) 0

□ 산출근거

과목구분	2019년 예산내역	
사무관리비	○ 비산먼지 및 공회전 단속용품 구입 등 20,000,000원	= 20,000천원
행사실비보상금	○ 특별단속 참여 시민단체 수당 30,000원*32명*10회	= 9,600천원
자치단체경상보조금	○ 자치구 비산먼지 및 공회전 단속 지원 49,250,000원	= 49,250천원

3 사업설명

□ 사업목적

- 대기질 개선을 통해 시민에게 쾌적한 생활환경 제공
- 미세먼지 발생 유발하고 있는 생활현장에 대해 민·관 합동 특별 점검·단속을 실시, 시민 공감대 형성을 통한 점검·단속의 실효성 확보

□ 사업근거

- 법령상 근거
 - 대기환경보전법 제33조(개선명령), 제59조(공회전의 제한), 제43조(비산먼지의 규제), 제81조(재정적·기술적 지원)
 - 서울특별시 환경 기본 조례 제 21조(환경보전활동에 대한 재정지원 등)
 - 서울특별시 자동차공회전 제한에 관한 조례
- 기타 근거(방침, 지침 등)
 - 미세먼지(PM-2.5) 고농도시 서울형 비상저감조치 개선대책(행정1부시장 방침 제52호, 2018.3.14.)

□ 사업내용

- 사업기간 : 2019. 1~12월
- 단속일시 : 서울형 비상조감조치 발령시행일 09:00~해제시까지
- 단속대상 : 교통·생활 2대 분야 4개 사업
 - 교통(2) : 운행차 배출가스, 공회전
 - 생활(2) : 비산먼지 발생사업장, VOCS 발생사업장
- 단속반 구성 : 총 66개반 285명
 - 시 : 16개반 60명
 - 배출가스·공회전 특별단속 : 6개반 30명(공무원 18명, 시민단체 12명)

- 비산먼지 특별단속 : 10개반 30명(공무원 10명, 시민단체 20명)
- 자치구 : 50개반 225명
- 배출가스·공회전 특별단속 : 25개반 150명(공무원 50명, 시민단체 100명)
- 비산먼지 특별단속 : 25개반 75명(공무원 25명, 시민단체 50명)

추진경위

- 서울형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 시민과 함께하는 교통·생활분야 특별점검·단속 추진계획 방침 수립(기후대기과-3451, '18. 3. 19)

2019년도 추진일정

(단위 : 천원)

사업추진절차	추진기간	예산집행금액	추진세부내용
계		78,850	
2019년 단속계획 수립 및 자치구 보조금 지급	2019.01~2019.01	49,250	세부 단속계획 수립 및 자치구 경상보조금 지급
비상저감조치 발령시 단속 실시	2019.01~2019.12	29,600	단속용품 구입 및 단속반 구성, 단속 실시
자치구 단속결과 평가	2019.10~2019.12		단속실적 및 결과보고 등

4 사업효과

최근 3년 추진실적

향후 기대효과

- 시민과 함께 미세먼지 발생을 유발하고 있는 교통·생활 현장에 대한 市·자치구 합동단속으로 미세먼지 저감 및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